

제40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29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5)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5)
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1)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9)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5)
2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2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2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2)
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5)
2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7)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1)
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4)
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6)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3)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54)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1)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6)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0)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8)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8)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9)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9)
44.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7)
45.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1)
4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6)
47.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3)
4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4)
4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8)
5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3)
5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0)
5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1)

상정된 안건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 3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3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5) 3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5) 3
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3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3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6) 4
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4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 4
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31) ... 4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4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4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4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4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4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4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 4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9) 4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5) 4
2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9) ... 4
2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 4
2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2) 4

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5)	4
2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7)	4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4)	4
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1)	4
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4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4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4)	4
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4
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4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	4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6)	4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3)	4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4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54)	4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1)	4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6)	4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0)	4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8)	4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8)	4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9)	4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9)	4
44.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7)	4
45.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1)	4
4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6)	4
47.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3)	4
4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4)	5
4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8)	5
5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3)	5
5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0)	5
5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1)	5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예정되어 있는 안건들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지난 23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 상정된 법안들을 법안별로 심사하여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5)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5)
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9)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3034)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946)
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93)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008)
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7631)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0)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
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9)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5)
2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1209)
2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363)
2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22)
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835)
2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317)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04)
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1)
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744)
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3971)
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0)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3)
3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6)
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3)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6)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54)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1)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6)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0)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8)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8)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9)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9)
44.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7)
45.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31)
4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6)
47.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3)

4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4)

4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18)

5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3)

5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0)

5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1)

(10시06분)

○**소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지난 소위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차관께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 관련해서 기재부와 의 추가적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부는 2020년 재정분권 이후 지자체 지방하천 예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고 예산 부담이 적은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를 도입해서 정비가 시급한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2020년 재정분권 시행 이후 아직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분권 취지에 역행한다, 현재 국가하천에 대한 투자도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지방하천까지 확대하기에는 여력이 좀 어렵고 기존의 국가하천 승격제도를 활용해서 정비가 시급한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재부의 의견이고 저희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전차 회의에서도 기재부의 사회예산심의관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1년이건 2년이건 5년

이 지나도, 1년에 한두 개씩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 2022년, 매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기재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 가서 부처 간에 논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부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다, 필요하더라도 하는 검토보고서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는 결정을 해서 진행해 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처 내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서 숙려기간을 갖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지금 기재부와 환경부 내에 합리적인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국회기 때문에 국회는 그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현재 올라온 부분대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관한 부분들을 결정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시행을 정부 간에 협의해 가면서 유예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되 원칙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지성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성호 위원** 기재부하고 환경부 간에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는 지방하천도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예산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는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지금 지성호 위원님께서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좀 유보하자는 얘기인 거지요?

○**지성호 위원**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하고 이학영 위원님께서서는 그냥 하시자는 거지요?

○이학영 위원 예, 법은 통과하고 시행은 적절하게 부칙으로 2년 유예를 한다랄지……

○소위원장 임이자 환경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환노위 이후에 또 법사위라고 하는 관문이 있는데 부처 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할 때,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김영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예기간을 뒤도 이게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본다는……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다른 합의 본 부분들이 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 본 부분들은……

○김영진 위원 합의 본 부분들은 합의 본 대로 하고요. 지금 수정 대안을 낸 거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시행 부분들을 조정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 대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주시지요.

기재부는 항상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들이 2020년, 2022년 엄청난 홍수나 이런 문제로 지방하천 중에 국가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양산했고 실제로 현재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늘려나가면서 지원하는 거나 대규모 홍수나 재난·재해로 예비비나 여러 가지 지원비로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에 총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져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비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유효하게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쓰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봐서……

반드시 기재부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항상 이런 문제는, 재난·재해나 홍수, 기

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사후약방문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되는 재난과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결정하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봐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소위에서는 결정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그 고민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유예기간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처에서 한번 조정해 보시라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부처에서? 그러면 이걸 부대의견으로 달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대의견을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 통과시키면 너무 일방적인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합의 본 건 합의 본 대로 하고 나머지 이 안에 대해서만 부대의견을 달고 가는 걸로 할게요,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김영진 위원 예.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안을 통과할 때도 부대의견을 달 수 있습니까?

이럴테면 부칙에 이 법의 발효시기, 시행시기를 정하는 거야 법안에 들어가는 문제일 것이고, 법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을 달 수 있나요?

○소위원장 임이자 예, 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령 어떻게 부대의견을 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전문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법안 통과하면서 구속력은 없지만 부대의견으로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진성준 위원 예산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측에 촉구하는 취지로 그렇게 법안을 의결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거야 그럴 수는 있겠는데 법안의 효력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법안의 효력 발생시기를 언제로 정해서 가신다는 거지요? 공포 후 바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소위원장 임이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6개월 유예기간을 뒀는데, 국가지원 지방 하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동의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또 어차피 지방에 다 이양했는데 이것을 다시 국가가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까지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하기는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호우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환노위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학영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예기간을 한 2년으로 해서 올려 놓으면 법사위에서 그쪽에서 걸러 내든지 자기네들이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우리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만큼 법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서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간 동안에 정부가 반드시 재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자고 하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더 세네요.

지성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호 위원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것을 받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부대의견을 단다고 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6개월 뒤에, 1년 뒤에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 기재부 의견 관련해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총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보기

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급격히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다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관한 지원계획들을 수립하지 총량을 1년에 다 한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부부처도.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면 당해 연도와 3~4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너무 걱정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세심하게 다 따지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을 해서 6개월이건 1년을 주면 그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요. 현재 여기에서 얼마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정하고 가면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지원 총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역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고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요.

○소위원장 임이자 이 부분만 계속 심사하기로 하시지요. 나머지 합의한 부분은 통과시키고 이것은 계속 심사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결과 요약본과 대안 및 수정안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한 부분은 대안에 반영하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 상정한 법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20항부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1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 개요, 제정안 주요 내용, 2페이지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환경부에서 시행령 제정 시 공청회 때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측 하단입니다.

민간 의무대상자에 대한 환경부 시행령 계획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경우에 배출자의 경우에는 2만 두 이상 양돈농가 3~5개소, 처리자는 국고보조시설에 한정해서, 91개소로 표시돼 있습니다라는 환경부에서는 계속 농림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배출자의 경우 연간 2000t 이상, 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처리자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페이지 관련 통계자료,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1번 목적·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입니다. 이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통합의견 기준입니다.

1번 목적 규정 관련 송옥주·임이자 의원님 안은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법률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되 목적 규정의 일반적 입법례를 고려하여 수단을 먼저 열거하고 입법 목적을 후술하는 형식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정의 규정 관련입니다.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되 첫째, 하수찌꺼기도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유기성 폐자원 정의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농·수·축산물류 부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정의하고 동·식물성 잔재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7페이지 우측입니다.

세 번째, 이 법에 따라 생산되는 것이 아닌 매립지가스는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정리 세 가지 사항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8페이지입니다.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특별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두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통합의견에서 두 안을 조정해 준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우선 목적에 있어서 수단을 먼저 열거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무엇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맥락으로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정의 부분에 있어서 하수찌꺼기를 추가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하수찌꺼기가 임이자 의원님 안에는 빠져 있는데……

○소위원장 임이자 송옥주 의원님 안에 하수찌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농·수·축산물류 부산물……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 부분도 폐기물……

○소위원장 임이자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세부 분류상에……

용어 수정한다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것은 동·식물성 잔재물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용어 수정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매립지가스는 제외……

○환경부차관 유제철 신재생에너지법에는 바이오가스도 있고 매립지가스도 있는데 이 법에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지가스는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라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다는 부분을 좀 명확히 법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이어서 소위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지자체는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사항 파악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운영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아랫 부분입니다.

국가와 광역지자체장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송옥주 의원님 안은 의무규정, 임이자 의원님은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되 임이자 의원님 안같이 공공 처리책무 주체를 반영하고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과 같이 재정적 지원 의무규정은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번 유기성 폐자원 배출사업자 책무 규정입니다.

통합의견입니다.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되 유기성 폐자원 수거·운반에 대한 사업자의 참여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제정안의 제5조 중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참여·협력의무는 가축분뇨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통합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과 같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운영을 지자체장의 책무 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통합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유기성 폐자원 처리책무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규정으로 하는 등의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사업자 책무는?

○환경부차관 유제철 사업자 책무는 조문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조문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협력의무도 4조로 이동을 해서 조문 위치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시설 설치의무를 둬으로써 향후 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4조 2항은 재량,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재량규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4조 3항은 자구 수정이 있고 4조 4항이 신설되는 거지요,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이쪽으로 신설하고 다른 조항에 있는 부분은……

○소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5조가 삭제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이어서 소위 자료 18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 및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 달성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의무생산자와 유기성 폐자원 사업자 등 민간의무생산자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되 바이오가스 생산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관련입니다.

통합의견은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는 생산수율 등 기술적 여건만을 반영한 계수로 시설 운영 현황,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목표산정 시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운영 현황, 지역 여건 등 정책적 여건을 고려한 생산목표율을 추가적으로 곱하여 생산목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대상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에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각각 공공 또는 민간의 생산목표 설정대상에 포함하되 동·식물성 잔재물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도가 낮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은 의무 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 달성 규정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되 공공·민간의무생산자가 관내에 처리시설이 없어 관할구역 유기성 폐자원을 다른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위탁 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량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의무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상자로 의무생산자 이외에 민간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가스량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환경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검토보고에 따른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환경부장관이 부여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민간과 공공의무생산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목표율을 도입해서 현실 여건에 맞는 생산목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기타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대상에 명시하는 부분과 동·식물성 잔재물은 현재로서는 의무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안, 그다음에 자기가 생산 못 하면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 실적을 구매할 때 의무생산자 이외의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구매하면 전량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부분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위임 전체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시 정리해 보면, 조항 순서가 좀 변경됐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제5조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이고요. 그래서 1항에서 연도별 목표 설정·관리의무가 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환경부장관한테.

○소위원장 임이자 연도별 목표 산정의무는 1항에 돼 있고 그다음에 생산목표율 반영이 2항이고,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생산목표율 2항에 반영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6조는 자구 수정이고요, 측정을 산정으로 한다가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6조는 자구 수정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자구 수정이고.

다음 7조가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그렇지요? 조항이 좀 바뀌었고.

다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장님, 잠시만……

아까 제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량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량이 아니라 그중에 일정 비율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25

쪽 통합의견 6조 1항 3호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시 말씀드리면 6조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제1항제3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3호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전량을 실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안 거고요. 전량이 아니라 환경부령이 정한 비율을 곱해서, 100% 하면 자기가 안 하고 남이 한 것만 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논의사항입니다.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첫 번째, 부담금의 취지입니다.

부담금의 취지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드는 경비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유도적 부담금 신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과대상 관련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의 경우 이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부담금에 관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우측입니다.

셋째, 부담금 용도 관련해서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의 용도 중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은 기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와 중복된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우측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유사 입법례 및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부담금’을 ‘과징금’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 1에 부담금과 과징금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33페이지 참고자료 2를 보시면 지자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부담금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우선 이것을 부담금으로 하게 되면 부담금 기본법 개정이 수반이 되고 하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수익자부담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과는 달리 목표 달성 미이행에 대한 금전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징금으로 하되 과징금의 기준을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와 실체 도시가스, LNG 가스가 거의 같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아니라 과징금이기 때문에 징수 주체는 행정청이라서 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따라서 삭제가 필요하고요. 과징금 그리고 그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도 같이 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똑같은 의견들인데, 기재부가 기존 부담금의 용도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부는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일단 부과대상 중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할 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 처분대상 폐기물에 바이오가스 생산에 필요한 폐기물인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무부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것들은 이미 매립이나 소각 처리를 했더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또 받게 되니까 이중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폐기물처분부담금, 그러니까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발생 억제, 처분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가 돼 있는데 이것을 부담금으로 해서 다시 이 부담금을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안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처분부담금과 이 부분의 용도가 중복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이것은 수용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김영진 위원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환경부차관 유제철 의무 이행 못 한 만큼의 금전적인 부담금을 지게 하는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과징금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예.

○지성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통계 관리.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39페이지입니다.

1번, 두 제정안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반입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입니다.

두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되 핵심 자료가 아닌 반입량과 용도별 재활용량은 삭제하고 ‘회수량’을 ‘처리량’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번 통계 관리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매년 유기성 폐자원 통계를 산정·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는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검토보고와 그에 따른 통합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반입량·회수량은 사실상 처리량과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요. 용도별 재활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바이오가스가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배출량 등의 보고 내용에 담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는 우리가 단순히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입을 한다면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지성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43페이지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및 통합생산시설의 설치입니다.

두 제정안은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수거·운반·이송을 위해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거·운반·이송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구조를 개선하며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작물 등을 병합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되 송옥주 의원안의 경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구조 개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축분뇨법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개인 재산인 축사의 구조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통합생산시설의 설치입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을 위해 우선적 설치의 의무를 의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유기성 폐자원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구조개선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가에서 양돈농가들이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위한 이 법안에 반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는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통합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통합의견도 수용을 합니다. 기타 에너지 작물이 과도하게 바이오가스에 투입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작물의 바이오가스 활용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통합 수정의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49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및 생산 지원입니다.

두 제정안은 공공의무생산자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되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수소 또는 열 생산에 이용 등 그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이용 권고대상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수소제조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를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번 생산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통합의견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여 반영하는 결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의 대상·용도를 고려했을 때 그 재정지원 방식을 보조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번 민간사업자 지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혐기성 소화액 또는 잔재물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 정비로 '혐기성 소화액'을 '잔재물'로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바이오가스 사용을 타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수소제조자 그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활용 권고대상에 추가하는 통합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주체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을 하고, 국고보조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혐기성 소화액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잔재물이 일반인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잔재물 등'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5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 및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 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통합의견입니다.

두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되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사업을 스스로에게 위탁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관련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통합의견을 수용하고요. 장관이 직접 설치한 센터에 대해서 장관이 위탁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보고 내용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이학영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58페이지입니다.

보고·검사,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시행일 등입니다.

두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 부과·징수대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위원님이 결정하신 대로 과징금 변경을 전제로 조문을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번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은 환경부장관 권한 및 업무를 지자체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게 위임·위탁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위임할 사항이 없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과태료 규정 관련해서, 통합의견입니다. 두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 위반 및 시정·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 규정입니다.

통합의견은 임이자 의원님 안과 같이 제5조의 시행일도 의무대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검토보고에 따른 통합의견을 수용해서 부담금 부과·징수대상자에 대한 보고나 검사대상을 부담금에서 과징금으로 수정한 부분, 그다음에 과징금의 징수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삭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시행시기, 시행일과 적용례에 대해서도 통합의견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 전문위원님, 위임사항이 없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삭제 이유가 뭐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이나 이런 데 위임할 필요가 있는…… 위임을 해야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도나 세종시에 위임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 차원에서 그냥 반영 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환경부에서 위임할 사항이 없어요, 세종과 제주에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환경부물환경정책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무대상자입니다. 자기가 의무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밑에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을 내용이 없어서 불필요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외한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되셨지요?

그러면 공공의무생산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고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인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것이 통합의견입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그것보다 시행일이 당겨졌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이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안은 10년 단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밑의 부분입니다.

시설 설치자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시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동 이용시설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설치·관리자를 개선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규정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밑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출지하수 이용 관리 주체는 지자체장이므로 동 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지원은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을 고려하되 다만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은 환경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료 경감 규정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일부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먼저 1페이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 포함하는 부분은 개정안 원안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 2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각각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지자체장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그리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6개월의 유예기간,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련된 부분도 개정안에 대해서 문구 수정한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항~25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박대수 의원안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오른쪽 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부 소관 법령 중 환경 분야 대체과징금 부과 입법례는 10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상한액인 5000만 원은 기술진단 관련 상위 사업자 평균매출액의 2%인 4560만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이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두 번째로—아랫부분입니다—연 1회 이상 침수위험지역의 하수관로 청소 등 유지관리 실시의무 부과 및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오수관, 우수관,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와 맨홀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준설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첫째, 안 제4조의4제1항제3호는 그 범위가 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이 곤란하고 현행법에 이미 관련 내용이 규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에 따른 조치 실시의무 구체화를 위해 개정안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수정 내용에 따라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도시 하수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에 대한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청소·준설의무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기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일부 문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5페이지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안은 지자체장의 책무에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추가하고 지자체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책무 규정을 보완하고 지자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평가할 의무를 부여하여 선제적인 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구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침수피해 위험도 예측분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침수피해 예방 책무를 지자체장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 지역에 대해서 침수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 침수피해 위험도를 예측분석하라고 하는 자구 수정과 관련한 개정안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하수도법 제5조 5의2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예.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9페이지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동 계획에 우수토실, 빗물받이 등을 포함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세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시행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6개월 후 시행을 하되 하수관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안들 그다음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즉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2개의 적용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7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은 이륜자동차제작자에게 배기소음 인증 결괏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결괏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EU, 일본 사례와 같이 이륜자동차 제작 당시의 인증값과 연동하는 소음규제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 내용은 이륜자동차 운행소음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현행 규정은 승용, 화물, 이륜자동차 등 차종별로 소음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부

과하는 형식인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런 별도의 소음규제 연동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에 이륜자동차와 배기소음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륜자동차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고 제작 인증 소음도와 연계를 해서 이륜차의 소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개정안 문구 수정을 수용합니다.

이륜자동차산업협회의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배달소음 문제가 심각한 이륜자동차를 우선 하고 향후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현장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제작하려는 자로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륜자동차협회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경우만 별도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문제를 이 수정의견이 포섭할 수 있나요, 차관님?

○환경부차관 유제철 여기서 수정의견은 이륜자동차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고요.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륜차 말고, 일반 오토바이만 규제를 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도 추후에 하지만 이륜자동차가 좀 더 국민들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그 결괏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해서 5dB 이상 초과를 단속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뒤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머플러 그다음에 배기소음장치를 탈착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부착하거나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일반인들도 단속을 할 수, 줄일 수 있게 하고요. 평소에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데 그때 다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진 위원 4페이지 보면 현재 소음인증시험 결과가 죽 나와 있는데, 현재 규정이면 현장에 적용해서 105 이하하고, 현재 경적 105에 5dB 초과한 110이면 규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닙니다. 위원님, 105는 현재 정해져 있는 소음허용기준입니다. 맥시멈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맥시멈이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런데 일단 제작되는 오토바이의 소음을 인증받게 돼 있습니다. 출시하기 전에. 인증을 받았을 때 측정한 소음이 인증 소음입니다. 그 인증소음은 105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85, 80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소형 이런 경우는. 그 경우는 80이면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105 또는 85 둘 중 낮은 기준인 8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5가 기준인데 105를 초과해서 110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고 105는 맥시멈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진 위원 뒤에 보면 83, 72, 84…… 105가 맥시멈이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지성호 위원 차관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지성호 위원 지금 현재 다 느끼는 바이기는 하겠지만 특히 이륜자동차지요, 굉장히 데시벨이 높아서……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주 주민들한테……

○지성호 위원 아파트 10층에서도 들리고,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막 시끄럽거나……

그래서 저는 이륜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빨리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 점진적으로는 차량, 일반승용차에까지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고 분명히 지금 적절한 시점에 이 법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차관 유제철 보시면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지만 가끔 또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가지

고 다니면서 너무 굉음을 일으키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성호 위원 제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 싫은 겁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국장님,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경찰과 협력을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진동이 사실 생활공해로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체감, 악취와 마찬가지로 공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좀 방치가 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도 만들고 단속도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 소음 규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 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및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번 이현승 의원님 안은 현행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이주환 의원님 안 반영 시 인용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1번 항목 이주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0페이지 부칙 규정입니다.

1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2번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인증표시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규정입니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하되 이륜자동차 소유자 변경,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음방지장치의 튜닝 등의 경우에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한 소음규제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소유자의 변경과 같이 인적 변동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을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매수한 경우에 5dB을 넘지 않는 상태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거나 개정안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이러한 사례를 반영해서 적용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2조 적용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의 범위에서 소유자의 변동은 제외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6개월 유예를 하되 일부 적용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칙 2조와 3조의 적용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 장관님,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새로 제작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륜자동차 중에 소리의 변형을 내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학영 위원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이 보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동소음규제지역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랄지 특정지역을 정해서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새로 규정을 정비해서 고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관내 지역에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배기소음도가 95dB 이상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적용을 안 해도 기타 법으로서 확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 박연재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8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의 미래세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위원 위촉 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이고 적용례 규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는 올해 10월 26일 날 구성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3페이지는 지금 활동이 종료된 1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전용기 의원님 안 중에 22조 3항만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 원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지성호 위원** 차관님, 그러면 참여하게 되는 아동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지금 정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동 다음이 바로 청년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청소년보다 나이가 어린 초·중·고등학교도 포함하고, 아마 18세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호 위원**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이라고 했을 때는 영유아 이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모의 조력이라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래서 아동을 대표한다고 하면……

○**지성호 위원** 아동이 지금 환경……

물론 이제 아동들이 앞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일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처럼 깊은 지식을 알고 있냐는 것이고, 또한 학교의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하면 부모의 의지나 선생님의 의지나, 본인의 결정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냐는 질문입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동들을 대리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또 학교 교사님……

○**지성호 위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대리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은 알겠는데, 법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임이자** 차관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소위원장 임이자**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 또 청년·청소년도 법마다 다 조금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성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더라도 아동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동의 의견을 대변할 거냐, 그러면 누가 참여해서 아동을 대신해서 대변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미 구성되어 있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나갔고 다음에 아동들을 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가 따로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호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아동들이 주체로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형법상 다 대리……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동이 사실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보다는 여러 가지 간접 참여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성호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명확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고요. 아동들이 환경이 소중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겠습니까만 그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의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냐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든가 다양한 주변 분들의 의지가 반영돼서 아이들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조금 궁금하고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 위촉을 할 때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시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말고도 청년 또 여성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 농어민, 중소기업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을 위촉한다는 건 아니고 그 아동을 대표하는 분은 선생님들도 있고……

○**환경부차관 유제철** 교사도 있을 수도 있고……

○**소위원장 임이자**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위원님들?

○**김영진 위원**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임이자** 별문제 없을 것…… 아동을 위촉하는 건 아니고……

○**김영진 위원** 이걸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위촉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지 않을까.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7살, 8살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 정도의 초중고, 만 18세 미만 중에 청소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다양한 계층·연령·직군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위원회 구성 시기에 그런 기준을 가지면 충분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 부분인데요, 청소년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 아동이라고 했을 때 아동의 정의가 또는 아동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소위원장 임이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청소년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더 넓은 개념으로 아동을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됐지요?

○**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의사일정 제29항~30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및 구제계정의 용도 확대 규정입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사용 용도 및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2번 구제계정의 용도 확대 규정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목적이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피해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해조사·손해액의 평가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별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법에서 소기업에 대한 보

험료 지원 근거가 있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피해 경감·복원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미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피해구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구제계정의 용도 확대 문제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구제계정의 목적하고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수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6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사유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성호 위원**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이것 노웅래 의원님 안 아니신가요?

○**노웅래 위원**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지요? 위원님, 받아들이십니까?

○**노웅래 위원** 예.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6페이지입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의 자료제출 및 변경 인허가 시의 보험요건 변경의무 부과 등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 또는 계약을 이러한 변경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에 성실하게 가입하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적합하게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반대 사유로 현행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가입 시 제출사항 및 계약 변경의무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보험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 및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안은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거짓으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미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환경책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 원안 찬성을 합니다. 다만 벌칙 부분, 47조 2항 2호는 일부 자구 수정이 있어서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준 의견은 개인이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손실보험 같은 걸 들 때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환경책임보험은 일반 제삼자에 대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적 계약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지성호 위원 저는 17조 4항·5항의 신설에 대

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환경부장관의 손해조사 실시 요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노동래 의원님 안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손해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3번 신정훈 의원님 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설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장이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4번 부칙 시행일은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적용례 규정 관련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의 자료제출의무 및 보험계약 변경의무와 미이행 시 벌칙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12페이지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인허가 기관이 책임보험 가입을 한 시설사업자에 대해서 관련된 필요 정보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검토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환경 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은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활성화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시료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의 정의에 따를 경우 채취해야 하는 시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및 다른 기관과의 중복 채취 여부를 검토해서 이를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환경시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번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위하여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환경시료은행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의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환경시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기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외에 환경공단 등도 시료은행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설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시행일에 대해서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걸 개정안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이상 2건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 이상 2건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이상 2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제3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4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Ⅱ 조문별 검토입니다.

경합범의 분리 선고 규정입니다.

정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그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상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법상 벌칙대상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 법상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두 가지 개정안, 벌금형의 분리 선고는 정부안으로서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4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관련 검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현행법에 따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설폐쇄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법에 근거 없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고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및 반입협력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4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기초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지 외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기초지자체의 책무 규정에 관할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기초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발생된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4개 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물의 발생지 내 처리 유인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생활폐기물은 80.9%, 사업장폐기물 65.4%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아닌 이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장의 발생지 처리 원칙 및 반입협력금제도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폐기물의 경우에는 현재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 재활용업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반입협력금 제도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 및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반입수수료가 크게 상이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반입협력금의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사항 두 가지는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발생지 처리 원칙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발생지 처리 원칙은 원래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생활폐기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반입협력금을 적용을 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또 시설마다 처리비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입협력금의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부분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8페이지의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에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처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3번의 개정안은 수용이 좀 어렵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사항이면서 또 일부 기존의 발생지 처리 원칙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자구 수정을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검토 내용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 2번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세요.

‘있으므로’ 그다음에 8쪽으로 가서 ‘생활폐기물로 규정할 필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넣자라는 거예요 말자라는 거예요?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7페이지의 수정의견 2번.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지금 민간 재활용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서 환경부에서 할

부분과 민간 재활용업체를 활용할 부분을 규정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들어갑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우리가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 주체가기 때문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입협력금 적용이 어렵고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타 지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폐기물들은 대부분 지자체가 직접 회수를 하지 않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 회수해서 관내의 처리시설에서만 재활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또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관내 또는 계약을 맺은 옆의 타 지자체와 광역 처리를 하는 대상의 폐기물은 사실상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종량제봉투 쓰레기와 또 분리배출한 음식물쓰레기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지자체 간에 처리하는 반입협력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환경부령에서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설명 다 됐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7페이지입니다.

기초지자체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책임 강화 규정입니다. 개정안 3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고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기초지자체장과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 폐지, 고철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일괄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18페이지 하단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최초 허가 시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 시에도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민간수거·자율처리체계를 공공책임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안 제14조제3항 관련입니다. 민간수거·자율처리 품목 중 폐지, 고철을 제외할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의 수거 업무가 기초지자체로 이관되어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존 폐지, 고철을 수거해 온 민간업체들의 영업의 제약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4조 제3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의6제1항 관련 지자체의 공동주택 여건 및 처리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서도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일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안에서는 3개월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안 제14조의6제5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 변경되거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공공부문에 의한 책임수거체계에 대한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폐지, 고철 또 폐식용유 등이 예시적으로 법률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굳이 폐지나 고철을 예시조항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삭제가 되면, 법률에서 삭제가 됐을 경우 시행령에서 다시 살리면 상위법령 위반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민간과

직접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품목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괄’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 계약금액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18페이지 맨 아래 3번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지성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부칙.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26페이지 시행일입니다. 통합의견입니다.

벌금형 분리 선고, 수수료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시·도지사의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등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서 공포 후 2년을 시행일로 하였습니다. 이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책임수거 전환을 위한 특정 품목 대행계약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14조의6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두 번째,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및 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제도 관련 규정은 신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므로 경과조치보다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서 반입협력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시행일 관련해서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별금형 분리 선고라든지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검사, 수수료 신설 같은 것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반입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품목 대행 계약의 근거를 통한 공공책임수거 전환도 공포 후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는 검토보고 조문의 오류 수정 부분 빼고는 통합의견을 수용하고, 끝의 홍석준 의원안 부칙 2조도 경과조치보다는 적용례가 더 법적인 명확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장님, 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단의 1번 시·도지사의 방치폐기물 부분은 원래 의사일정에 있다가 빠진 부분이여 가지고 이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소위원장 임이자 난 없는데,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26페이지 1번.

별금형의 분리 선고와 수수료의 법적 근거 신설 부분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시·도지사 부분은 삭제해야 됐는데 삭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나는 없는데?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없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없는 게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4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36항부터 43항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의 재질·구조기준과 환경부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 항목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부분에 보시면 환경부의 색상, 무게기준 항목 추가계획안입니다.

색상은 현행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색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무게 부분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내용인데 경량화지수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에서 벗어난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경량화지수가 과도하게 높은 포장재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포함한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려는 취지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포장재의 두께·포장무게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제품의 손상 및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디자인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해외 규제 사례가 부재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통상 마찰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3개 협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기준 항목 추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할 경우의 수정의견입니다.

용어 중에 ‘두께’와 ‘포장무게비율’은 이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무게’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포장재에 있어서 생수나 음료용 페트 같은 경우는 무색으로 하는 것이 재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색상도 기준에 넣을 필요가 있고요, 색상은 하위 고시에 따라서 이미 정해지고 있는 것을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두께와 포장무게인데 여러 우려가 있고, 두께나 포장무게가 사실은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게기준만 추가를 해서 포장재 재질·구조기준에 담아서 규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차관님, 포장재 재질·구조기준 항목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관련업계 아니면 관련자들 아니면 단체 관련해서 이 문제에 관한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됐나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두께와 색상·무게 비율을 낮춰서 전체 재활용의무 관련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과잉포장·과잉디자인에 의한 과다행위를 예방한다라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르는 사전 작업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 경우에 자료 3페이지에 있다시피 화장품협회와 그렇고 또 식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포장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건강기능식품협회 같은 데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들이 완화시키기를 바라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저희로서는 무게뿐만이 아니고 두께까지 넣어서 법안을 예고하고 정부안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협회 같은 데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 일단 협의는 했지만 여전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협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대단히 이것 중요한 사안이고 만약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산업이나 현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것을 준비하고 사전 예고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정되고 있어서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 안의 마지막이 공포 후 즉시 아납니까? 그렇지요, 법안 자체가?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년입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납니다. 공포……

○**김영진 위원** 마지막에 1년으로 돼 있납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준비가 가능할지에 대한 사항들이 필요한 것 아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상호 인지하고 숙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 아납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들을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무게기준을 가지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했듯이 무게와 부피의 비율을 고려한 경량화지수를 도입해서, 물론 너무 과도하지 않게 업계와 협의를 해 가면서 마련하겠다고 하고요. 법안에서 이 부분을 담아야지 우리가 경량화지수를 앞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이자**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차관님,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 방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들이 완전 충격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후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좀 거친 이후 이러이렇게 갈 것이다 예고해서, 가는 것도 1년 후에 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충분하게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오늘 법을 딱 통과시켜 버리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버리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아납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원순환국장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게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수 만드는 페트병만 보아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드는데 특정제품들이 과도하게 재료를 많이 쓰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제품에 한정해서 먼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 5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나다만 적

용범위는 페트병 등에 우선 도입을 하고 적용결과를 토대로 타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품목과 그런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산업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도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에도 보면 개선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려울 경우 총 개선기간을 3년까지 연장 가능’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실제로 각 종이팩, 유리병, 일반플라스틱, 합성수지, PSP, 페트병 등 다양한 종류에 있어서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따르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조금 더 숙려해서 안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지금 그냥 우리가 편하게 결정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야 편하겠지만 이 기준을 만드는 환경부나 아니면 관련업체, 관련한 일을 하는 여러 단체 그다음에 개인 소비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준비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정선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 항목이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준비가 된 페트병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김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법안에는 페트병이라고만 딱 특정해서 지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장재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포장재 재질·구조기준 항목에 대한 두께, 색상, 무게니까. 그렇지요, 다 적용되는 거지요. 포장재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임이자** 지성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재질문제, 구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심각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협회 같은 데서는 점진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지요. 업계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주는 것도 감안해서 놓고 볼 때 하루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색상은 무색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또 두께나 포장, 무게에 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부차관님, 담당 국장님께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미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기본적으로는 필요하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이 기준을 지켜야 되는 대상자는 모든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역량도 돼 있고, 우리가 1년 동안 더 협의하면서 준비하면 그분들하고는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하여튼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혼선에 대해서 우려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이 포장재 관련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그러한 우려가 생기면 저희 환경부도 굉장히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맡겨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쳐 가기 위한 노력의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성호 위원** 지금 과대한 포장재 문제로 해 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 포장에 있어서부터 작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플라스틱 물병이라든가 관련해서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이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자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포장재 부분은 저희가 90년대 종량제를 할 때부터, 재활용법을 만들 때부터 포장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포장 방법, 포장 재질, 포장 횟수 같은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는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과대포장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요새는 배달을 비롯해 과다한 양의 일회용 포장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이 커져서 이 부분도 그런 면에서 담았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기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국장이 얘기했듯이 안 써도 되는 과다한 양의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는 조금 제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6항~제4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논의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기준 항목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추가 이것도 논의될 게 많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기준 설정도 그렇고 일회용품 규제대상 확대도 그렇고 다회용기 회수·세척사업자 지원 및 제로웨이스트매장 설치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될 소지들이 있으니……

우리가 마지막 법안소위가 언제지요, 12월 6일 인가요? 그때까지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위원님들에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여당 위원님들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하다 보면 이것도 다 못 할 거라고 보는데.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환경부에서 위원들에게 문제되고 있는 포장재 사례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찍어서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만 보면, 과포장 금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심한지 자기 일상 외에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주시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도 규제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산업 분야의 고민도 천천히 담아 가면서, 그러나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적절한 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고민할 수 있게 준비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이것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

로 하고……

○김영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님, 어차피 다음 주나 그다음 번에 얘기해서 잘 숙려해서 처리하고 적용하면 되니까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련한 조항들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디자인, 색상, 두께 다 사실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 왔던 과정이고 그것을 정부가 규제해 나가면서 정착해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외 사례의 예라든지 담당 국장님과 연관된 국에서 자료를 죽 모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12월 6일 전까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시고 그다음에 양쪽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정의당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여야 전문위원들하고 먼저 논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 갖고 양쪽 당의 전문위원들이 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안 하고 다 통과시키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학영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제45항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46항~49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같이 심사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소위원장 임이자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에 일부개정법률안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뒤의 것은 안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개정법률안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같이 비교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비표 형식으로. 다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단 먼저 되고 난 뒤에 거기다 또다시 일부개정법률안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개정법률안 할 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5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전 주기에 걸쳐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처분의 전 주기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목적 규정은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폐기물 위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 유통의 정의를 신설하고 순환이용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순환원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정의와 범위를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순환이용의 정의 중 임이자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정의는 사용된 물질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활동과 중복되므로 통합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 환경부가 추가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원순환산업을 산업 분류를 소관하는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정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본원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특별법, 임이자 의원님 안

은 일반법입니다. 통합의견은 임이자 의원님 안과 같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법의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자구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 6쪽, 순환원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굳이 여기 없어도 누구나 다 이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서 빼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순환이용의 정의 중에서 가부터 다까지 부분은 라목으로 통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수정안은 자원순환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산업 분야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기타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안, 개정안 수정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부여한 임이자 의원님의 원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여러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9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순환경제 통계조사입니다.

안 제8조는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관련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1항 부분은 그렇고 2항 부분에서는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제3항은 기술집약형 기업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안 1항과 제2항 시책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안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순환경제 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집약형 기업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제3항은 미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 환경부의 추가적인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료, 유통 등 분야별로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급’ 문구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번 순환경제 통계조사입니다.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의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5항은 환경부장관의 통계조사 업무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2항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는 한국은행에서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제5항에서 통계조사의 주체에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1항과 수석전문위원 발표한 통합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유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내용을 통합하고 기술집약형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개념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급’이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를 수용하고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쓰는 것이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주체도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29페이지입니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관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고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13조 제1항은 국가의 중장기 순환경제 목표에 노ong래 안의 경우에는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송옥주·임이자 의원님 안은 자원생산성, 폐기물발생감량률, 순환원료사용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도의 순환경제 목표로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1항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로 폐기물발생감량률 및 순환원료사용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앞 페이지 29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경제 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관한 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 간 협의에 따라 환경부의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생산성과 순환원료사용률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자원생산성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행 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원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이를 미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국가와 시도 순환경제 목표로는 반영하되 산업계에서 제시된 사업자 부담 확대 등 우려를 고려하여 사업자 순환경제 목표에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안 13조 제1항 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 순환경제 지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과 협의회가 필요해서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시설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목표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16조 7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에 산업통상부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개정안을 수용한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수용이 가능한데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순환경제 지표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하자 이렇게 안이 돼 있고 저희가 환경부령으로 돼 있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는데 국가 순환경제 성과지표는 하위법령으로 해서 또 정할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항은 삭제해 주시기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36페이지의 5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의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이것을 삭제하자는 게 환경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삭제 이유가 주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지금 법률로 폐기물발생감량률과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그다음에 에너지회수율을 정하고 다른 국가의 주요한 순환경제 지표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위법령이 아니고 법률에서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의 순환성 제고 및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폐기물의 순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개정안을 미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오전에 의결하셨습니다. 입장을 고려해서 제9조를 미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48페이지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지자체장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의무를 규정하자는 내

용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포집에 노력하도록 하며 제3항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신규 설치, 교체할 경우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순환경제 달성에 유리한 시설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 제1항은 반영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에서 매립시설 운영 시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처리를 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항도 반영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3항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오전에 통과하였기 때문에 제3항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의 타 법률들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법의 취지를 살려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51페이지입니다.

원료·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및 순환이용성 평가입니다.

안 제17조는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을 규정하여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원료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화는 현행 자원 재활용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와 중복되므로 개정 내용을 미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 간 순환원료의 교환 촉진사업은 현재 기업 간 순환원료 교환 사례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미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순환원료 사용 촉진 지원사업 추진 주체에 산업통상부장관을 추가하고 그 밖에 정하는 사업을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입니다.

개정안은 제품 생산, 수입자에 대하여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공법 사용,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의무규정이 아닌 제품 순환이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노력규정으로 완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안 제18조제2항제1호의 자원·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18조 1항에서 제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옥주·임이자 의원님 안은 제1항에서 기존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순환이용성 평가’로 변경하고 평가대상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제3항에서는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도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은 평가 결과를 공개한 다음 다음 연도 이후에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목적을 명확히 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송옥주·임이자 의원님 안 제19조제3항 관련 동종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순환이용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여부 판단기준도 부재하여 개선권고대상 제품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 내용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안 제19조제5항의 경우 현재까지 개선 권고를 미이행하여 평가 결과가 공개된 사례가 부재하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 정착 이후에 반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각 발의안과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안전을 반영한 통합의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부분들, 예컨대 자원에너지효율 같은 부분이라든지 기업 간의 순환원료 교환 사례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 재활용법에 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는 안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에 대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또 제대로 개선을 안 할 경우에 명령을 하는 부분들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제재보다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통합 의견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69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입니다.

안 제20조 1항과 제4항은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관련해서 포장재 표준화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제4항 부분은 포장재 없는 매장 설치·운영 등 유통 과정에서의 포장재 감량 촉진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관련 중복되는 사업 근거를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0조제4항은 자원 재활용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내용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의 추가적인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대상 제품을 유통포장재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에 대하여 포장재의 자체 순환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는 포장재 중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를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20조 제2항·제3항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및 재사용 의무화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유통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2항은 노력규정으로 완화하고 제3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0조 2항의 적용대상인 유통사업자는 제품의 판매 방식,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수입자에 대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품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예비부품 제공 및 배송 등으로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리에 필요한 전문정보 제공 시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1호의 준수사항을 노력규정으로 수정하고 제1항 각 호—좌측을 보시면 있습니다—중 정보 및 기준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제2호하고 제4호에 대해서는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는 재고품의 활용 촉진입니다.

제1항에서는 생산·수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고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항에서는 의무 미이행 시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류, 가방 등의 재고품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의 추가적인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고품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개정 내용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먼저 기본적으로 통합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69쪽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사업의 각 호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원 재활용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 예컨대 포장재가 없는 매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활용법 해당 조항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대상 제품을 유통포장재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포장재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재사

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반영하지 않는 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노력규정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안 그리고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노력규정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7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위해서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일부 이견이 있어서 수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안전한 해체기준의 제공과 같은 부분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 또 기업의 영업비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73쪽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 재고품의 처분을 막는 것도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일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82페이지입니다.

순환자원의 인정 및 고시입니다.

안 제23조와 제24조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 인정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5조는 순환자원의 고시입니다.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중 유해성이 없고 순환자원 인정이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행정절

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에 대한 규제에 의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해성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성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취소 근거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기존에 인정되고 있던 순환자원의 인정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타 통합의견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94페이지입니다.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및 인증표시입니다.

안 제29조 1항은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즉 순환자원인증제품에 대해서도 품질표지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29조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품질표지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 수정의견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수정의견 그리고 통합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8페이지에 조문 29조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사실상 인증의 기준이 되는 원료의 사용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품질표지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문의 명을 '인증표시'가 아닌 '사용표시'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표시보다는 사용표시가 적절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00페이지입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개발 및 출시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규제의 일괄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 근거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35조를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기존 타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법에도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35조에 신설하게 되는 일부 임시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3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된 지자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표시를 보시면 현행 법령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징수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위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처분부담금의 50~90%를,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안 제10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부를 폐기물을 처분한 시도에 교부하자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에 한정하여 일부를 폐기물을 처분한 시군구에 교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자체 간 폐기물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보전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건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추가로 교부할 경우 환특회계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의견은 징수비용에 대한 보전 목적 외에 지역에 대한 피해보전 목적으로 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의견은 지자체 간 폐기물 이동으로 인한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의결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5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억제율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관련 협회에서는 폐기물배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현행법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50조 제2항에 따른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대상 중 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1호, 제4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안에 대해서 수용의견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뭐라고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특별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임이자 의원님 안에 동의한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렇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44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순환자원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수익금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순환자원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확보를 통하여 지자체의 순환자원사회 전환 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표시를 보시면 현재 순환자원특별회계는 경기도·목포시, 2개 지자체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순환자원특별회계 세출사업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순환자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추

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51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1번 안 제27조제1항은 현행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자,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외에 자원순환 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 내용 미반영입니다. 자원순환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내용 미반영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순환이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입니다. 조문 위치 조정에 관한 자구 수정입니다.

3번입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청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자원순환’을 ‘순환경제’,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6번 기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보고 및 검사 등과 과태료 대상 중 당초 준수 의무규정에서 노력규정으로 전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부처 간 협의에 따른 환경부의 추가적인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 관련 유통사업자 포장폐기물 최소화 책무와 관련하여 유통사업자의 범위가 일반 제조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산업부 의견에 따

라 ‘포장재’를 ‘유통포장재(수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로 축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 변경 시 심의위원회를 현행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청문절차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안을 이 법에 추가하는 내용들 등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기타 사항들은 통합의견에 따라서 수정된 내용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협의로 인해서 추가된 수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이 책자 내용에는 해당 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현행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하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77페이지입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순환경제특별회계세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번 적용례 규정은 임이자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본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경과조치 규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단체 및 순환경제특별회계에 대하여도 경과조치 마련을 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송옥주·임이자 의원님 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누락되어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시행일, 적용례 그리고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의 개정은 통합의견대로 수용을 해서 이 법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조항은 2028년부터 또 일부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 추가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공포 후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부처 협의를 통해 앞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 마련하기 위한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2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3조부터 제15조 그리고 제37조, 원료·제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순환이용성 평가를 규정한 제17조와 제19조 그다음에 유통 및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 촉진을 규정한 20조와 21조, 22조 등의 이번 신설 조문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무적으로 한 2년의 유예기간을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제13조부터 제15조 그다음에 제37조 그다음에 두 번째 원료·제품 순환이용 촉진과 순환이용성 평가를 규정한 17조부터 19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규정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이 부분을 2년간 준비기간으로 요청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나머지는 1년이 원칙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소위원장 임이자 이번 전부개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산업부 얘기를 많이 들어왔냐라는 볼멘소리도 지금 들립니다. 본 위원도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전부개정안만큼은 통과를 시켜 주고 산업통상부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노위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나중에 국정감사라든가…… 이것은 아직 유예기간 있으니까 좀 더 챙겨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일단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준비해서 가지고 다음 6일 날 할 때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 소관 법안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3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0항~제52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소위 자료 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수문기상 정의 신설 및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지원을 위하여 수문기상 감시·예측 및 정보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문기상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수행 중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가뭄상황조사, 홍수 및 갈수 대응을 위한 수문 감시·예측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문기상에 대한 정의 및 업무영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수문기상의 정의를 수정하고 환경부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업무중복성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문기상의 정의에 관한 수정의견을 비롯해

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자구 수정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후변화감시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6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후변화감시 강화를 위해 기상업무 정의 규정에서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별도로 분리·규정하고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영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은 관측의 대상이 기후변화인 점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 규정과 영향관계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자구 수정 그다음에 영향관계 조사 부분에 대한 체계 변경사항 모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13페이지입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 수립·시행체계 정비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상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상정책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위원회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주체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정책위원회 신설 시 기존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상정책위원회를 수용할 시 수정의견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상정책위의 심의사항을 심사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11개에서 4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일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기상정책위원회 수용 시 기상청장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에도 기상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 마련은 필요한 규정입니다.

5번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시 국회 제출의무도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이 부분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그다음에 각 부처 의견에 관련된 내용, 세 번째 저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2005년도 12월 달에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 외청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 외청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치는, 심의·의결기관을 거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의견이고 과학기술자문회의 대신에 저희 기상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했던 안입니다.

두 번째, 각 부처의 의견은 과학기술정통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금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주체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저희 기상정책위원회 신설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기상정책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이에 개정안의 위원회 신설 조문과 기본계획의 현행 국과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기상청에서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임이자 기존에 있던 기상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 폐지를 하고……

○기상청장 유희동 아닙니다. 지금 기상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저희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 유지를……

○소위원장 임이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수정의견과도 다른 의견이네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기상정책위원회의 신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수정하고요?

○기상청장 유희동 그것도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안에서 내놓은 기상정책위원회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행안부 안을 받은 거네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행안부 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 안도 받은 거고요.

○김영진 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네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기존에 활용하던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 안 받고 기존에 있었던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이 부분을 받겠다는 거지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위원장 임이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소위원장 임이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상정책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업무를 기존에 있었던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기상청훈령에 근거 운영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기상청은 기본계획 수립 시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정책자문회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다음 기상 관측망 종류 명시 및 고층기상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24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상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목적에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생산을 추가하고 기상 관측망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지상기상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근거를 신설하여 반영하고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구축·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 관측정보 제공 요청 목적 제한입니다. 기상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관측시설의 공동 활용 및 관측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측정보의 제공 요청 사유를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로 한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 관측정보 제공 요청 대상자를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관측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범위에 제한이 없고 실제 기상청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특수 관측자 중 일부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일 수 있으므로 그 제공 요청 대상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제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24쪽에 있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관측망을 정비하면서 지상·고층 관측망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5쪽에 있는 특수 관측정보 제공 요청 목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것 그리고 특수 관측정보 제공 요청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 역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예보·특보의 근거 규정 정비.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윤준병 의원님 안은 예보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예보의 정의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상하여 알리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가 예보의 대상으로 기상현상과 기상영향을 함께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면서 예보 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보·특보의 공표 방식입니다. 개정안에서 예보와 특보 근거를 분리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특보의 공표 방식에 관한 내용은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보의 목적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의 목적이 특보의 목적과 유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에 대한 대비·대응'은 삭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하단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태풍예보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태풍예보는 예보업무규정에 따라—기상청 훈령입니다—기상예보 종류의 하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호우, 대설, 황사, 폭염 등 다양한 기상현상 중 하나인 태풍에 대하여만 예보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예보구역(기상, 해양 기상, 항공기상 등)별로 각 기상현상을 구분하고 예보의 유형을 기상예보, 해양기상예보, 항공기상 예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여 태풍예보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6페이지입니다.

윤준병·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상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하고 해양기상특보의 해양 관계 기관 별도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기상사업자가 항공기상예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32쪽, 예보 정의를 함에 있어 관측 결과 활용에 한정하지 않고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추가하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33쪽 위의 부분,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보·특보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특보와 차별화되도록 예보 목적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태풍예보에 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36쪽의 산재된 통보처를 정비하는 내용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34쪽에 있는 태풍예보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예보는 말씀하신 대로 현상예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예보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피해 규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현상보다도 크고요. 그다음에 태풍예보는 어느 하나로 일어

나는 재난이 아니라 강풍·폭우·해일 등 복합재난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다른 모든 특보·예보 상황은 각 지방청 지청에 있는 예보관들이 먼저 예보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거치지만 태풍예보는 너무나 특수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본청 총괄예보관이 전적으로 관여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할 때 현상예보에 국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태풍에 관련돼 있는 예보·특보 업무를 따로 기방법에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풍예보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53페이지입니다.

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및 기술 개발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은 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 미반영입니다. 기상현상의 감시와 분석은 예보 및 특보 과정의 일부로서 예보·특보 생산단계의 모든 과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2번 예보·특보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 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감시와 분석 업무는 예보 과정 중의 하나이지만 개정의 실효성이 수정의견대로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개발 조문과의 중복성, 개정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예보의 효율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정확도와 신속성을 기여하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있지만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57페이지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특정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적절하므로 재량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하겠다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59페이지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은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를 법제화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보관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예보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 법조문을 통합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59쪽에 있는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보관 교육과정은 통합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요. 나머지 수정의견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64페이지입니다.

국가기상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의 마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기상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즉 사무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없으며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성격이 기상청 하부조직인지 물리적 시설인지 불분명하므로 동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65페이지입니다.

국가기상센터를 수용 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설치·운영사항은 재량조항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업무수행조직이 아니라 사무실이므로 국가기상센터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이 부분은 우선 행안부와 의견이 조율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 사무공간 개념의 센터들이 규정돼 있는바 저희 안대로 국가기상센터의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사하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또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업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조직과 관련되지 않은 사무공간 개념의 유사한 센터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저희도 센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센터는 신설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는 합의한 거지요?

○기상청장 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상센터 수용 시 수정 의견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67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6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특보를 통보받은 기관에 대한 조치의무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특보를 통보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보받은 특보를 알리는 것 이상으로 실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 법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 여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69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25조의2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 여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68쪽 특보를 통보받은 기관의 조치의무 부여와 69쪽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근거 마련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 수행으로서의 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보도 각 지역의 취약성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특별한 정보제공과 재난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안, 기관의 조치의무 부여와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기상재해 현장에 기상전문가 파견, 위험 기상정보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대상 재난 예·

경보체계 활용 기상특보 전파, 방제업무 담당자 방제기상전문교육 이수 부분 그다음에 지자체에 방제기상지원관 파견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령에 반영돼서 저희가 재난업무를 각 지자체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 정부 측 안에 동의하면서 저는 질문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에 대한 비용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비용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의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선박이 있으면 물고기잡이 어선이 있을 거고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가지고……

○기상청장 유희동 위성수신기는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600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이 반,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민들 지원체계와 같이 반반 원칙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6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장님, 좀 전의 논의 사항은 기상청 의견을 반영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이자 예.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73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 대 국민 교육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17년에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시 환경소위 심사 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기상업무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기상교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74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기후변화 관련 업무 담당

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기후변화 관련 전문 교육 이수 의무화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75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관련 출입검사 권한까지 기상청에 부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출입검사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 지정기준 미충족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가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우선 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20대 국회 2017년도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교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상황은 지금 기후변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상교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은 지금 시대상황과 기후변화 위기상황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리고 소위 약칭 탄소중립 기본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정부에 관련돼 있는, 교육에 관련돼 있는 내용 골자는 정부 전체가 이런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개략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소까지 모든 것이 기후변화 현상 등 감시와 예측에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 기상청의 과학적 근거에 관련돼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3쪽과 74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 안대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75쪽에 있는 내용은 수정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73쪽에 보면 의무화잖아요.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기상청장 유희동 73쪽하고 74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부분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각 정부부처의 개략적인 내용만 있을 뿐 정부 자체에서 힘써야 된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대부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기후변화 과학·대응·적응 그다음에 감소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 과학·감시·예측의 기본이 되고 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감시와 예측 분야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대응·적응이나 감소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상청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교육 근거 마련도 보면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 대한 교육을? 교육 근거가 있으면 교육이 가능하고 근거가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게 초중고·대학생, 전 국민 5100만 명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상청장 유희동 초중고·대학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무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교사 이런 부분들이, 의무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쪽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예를 들면 교사나 관련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이런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것들 교육을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법적 근거가 없이 저희가 그대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무규정이 없는 한 교육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생각

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의무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면 2016년에도 아마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 뒤에 나오듯이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전문교육 실시 현황 아십니까? 60명 2회, 2021년에?

○기상청장 유희동 16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진 위원 아니, 73페이지 보면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60명 2회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에서?

○기상청장 유희동 73쪽에 있는 그 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예, 73쪽이요.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한번에 확 펼쳐서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저는 의무규정으로 두게 되면 상당히, 기상청도 그렇고 이 조문을 바라보는 국민도 그렇고 마치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이걸 볼 수 있어서 기상 관련한 단체·기관·교사 이렇게 특정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그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유연하지 않을까요, 집행에 있어서도?

○기상청장 유희동 저희 담당 국장이……

○김영진 위원 담당 국장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상청기획조정관 유상진 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11번 주제 첫 번째는 대국민 일반적인 교육이고 이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페이지가 73페이지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기상청의 대국민 기상교육 실시 현황에 보면 교사 대상도 있고 대학생, 중고생, 산간 초등학교, 이런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이걸 매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전문교육 의무화인데요. 이것은 기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교육의 사례로는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기후변화 위기가 극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검토한 결과 최신 기후변화 분석자료를 잘못 활용하거나 기후통계 분석 방법 등 해석하는 데 이해가 부족한 다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으로 하고 기상 분야에서 의무교육을 실행해 왔듯이 기후 분야에서도 의무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해 가겠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대략 대상자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략 현재 대상으로 포괄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요?

○기상청기후과학국장 이미선 기후과학국장입니다.

현재 적응대책을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도 단체까지 다 해서 한다 그러면 기관당 한 2명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10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영진 위원 1000명이요?

○기상청기후과학국장 이미선 예, 기관은 한 450~500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획조정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초지자체, 시도 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청이 그런 적응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감시·예측 정보의 오류로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정보를 활용하는 지자체나 시도 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것들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국가적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문위원 의견 한번 쥬 보세요.

왜냐하면 2016년에 발의가 돼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들이, 기후변화 업무 담당자와 전문교육을 하는 거기를 특정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 한번 쥬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일단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실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상청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 부처 차원에서 같이 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기상법에 대해 부결된 사례는 회의록을 보면 ‘국민에 대한 기상교육은 기상 관련 홍보나 정보제공의 의무인 것이다. 교통안전교육·환경교육과 같이 국민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삭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의무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입법 사례로 보여집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국민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남겨 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기상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문제예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라는 게 기상청 단독으로, 현상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저감시설이나 관련 시설 설치, 환경교육,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교육을 하더라도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정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성호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전 부처에서 협업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일이라 하면 기상청은 또 고유의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를 봐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여쭙는다면 그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 가지고, 또한 기상청과 지자체 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대국민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해 기상청에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국민 홍보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겨울이 오면 또 나름대로 폭설이 올 것이고 또 여름이 오면 폭우가 내릴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 이 시점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기상청장 유희동** 제가 전체적으로 김영진 간사 위원님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대국민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 부분은 논외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후변화, 기상과 관련돼 있는 전문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교육기본법 및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사항에서는 대국민에 대한 부처의 교육 시책 수립과 실행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전 부처 공통사항이고 그렇게 되는데 기상청만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고 기후변화에는 기후변화 과학·대응·적응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감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기후변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적 근거,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분야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은 같이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가장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 기상청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비상재난 대응에 관련돼 있는 전문기관에 있는 당사자들의 교육을 의무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은 기상청에서 교육을 실행해야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하기 위해서 최신 기후변화 분석자료나 통계자료의 잘못된 적용에 의한 오류 등을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왜 기상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를 기본사항으로 모두 다 배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 대국민 교육의 근거 마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조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김영진 위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청장님,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전문교육을 60명 했잖아요, 2021

년에, 이것을 의무화하면 내년부터는 1000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유희동 기후국장이……

○김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기상청기후과학국장 이미선 한꺼번에 1000명 이라기보다는 이게 3차 적응대책이 5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나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시도 단체가 다 해마다 한 20~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5년 안에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뉘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부담없이 해요. 통과.

○소위원장 임이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대로 이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차라리 간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서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가 그래 봤자 지엽적인 것밖에 안 될 텐데……

○김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60명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업무라서 저는 1년에 모든 지자체를 1000명씩 불러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절적인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기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처럼 전문직렬이라서 입직해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2년이나 3년 하고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때문의 얘기라서 저는 이런 정도로 100명 정도씩 순환해서 하는 정도면 충분하게, 업무로도 없고 자치단체에도 부담이 없다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을 매년한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안분해서 진행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수용을 합니다.

○지성호 위원 기후변화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재난재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복합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상청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4시간 교육하는데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용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 수용해서 진행은 해보는데요 실시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국감 때 지적하시면 되지요.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과 이후 진행하시면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기상청장 유희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1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인원에 대해서 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상당히 어정쩡하긴 합니다.

다음 기상과학관 설립 시 사전협의 규정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81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지자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 후 기상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부칙에 경과 규정 등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임이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85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기상산업진흥법의 규정을 기상법에 이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미반영입니다. 현행법에서 기상법을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및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있고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상법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 삭제입니다.

이어서 87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범위를 기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한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협약대상기관 정비,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등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85쪽에 있는 소관 개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87쪽에 있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에 관한 내용도 현행법을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100페이지입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기한에 대한 경과조치는 없어도 무방하므로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는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문 수정에 따라 맞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은 조금 전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유희동 경과 규정, 유예기간 등 모든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임이자 다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예.

○소위원장 임이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다음 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영진 노웅래 이학영 임이자
지성호 진성준

○청가 위원(2인)

우원식 이주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유제철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환경보건국장	황계영
정책기획관	이창흠
대기환경정책관	박연재
물통합정책관	박재현
물환경정책관	류연기

기상청

청장	유희동
기획조정관	유상진
예보국장	정관영
관측기반국장	연혁진
기후과학국장	이미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이정환
항공기상청장	손승희